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24호

##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 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 다. 안전점검표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	-----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 의 자 : 서명일·구점득·권성현·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수혜·김영록·김혜란·남재욱·박선애·박해정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종화·이찬수·전홍표  
최은하·최정훈 의원(20명)

##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 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 다. 안전점검표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 창원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목”을 “수목의”로,  
“관리”를 “위해(危害) 수목 제거 등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6.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출입 시 지켜야 할 항목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취사,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기구 이외의 물건 적치 등의 방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가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 중 노후시설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와 합  
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예산 확보 및 지원)”을“(안전점검표의 게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창원시가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관리주체에게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예산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표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표의 게시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부터 적용한다.

■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월별 안전점검표 (제4조제1항 관련)**

1. 안전점검 항목

- 점검 결과 : 양호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												
점검자	구청 성명 (인)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												

## 2. 안전점검 방법

-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위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나.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 다.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략)</p> <p>2. <u>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u></p> <p>3.·4. (생략)</p> <p>5. <u>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6.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u></p> <p>3.·4. (현행과 같음)</p> <p>5. <u>수목의 --- 위해(危害) 수목 제거 등 관리-----</u></p> <p>6. <u>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u></p> <p>7. <u>반려동물 출입 시 지켜야 할 항목에 관한 사항</u></p> <p>8. <u>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u></p> <p>9. <u>취사,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의 방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u></p> <p>10.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의2(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가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노후 시설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안전점검표의 게시 등) ① 시장은 창원시가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관리주체에게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예산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  
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  
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  
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  
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삭 제>

<삭 제>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현수막, 안내표지판, QR코드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 활동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지역경제과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구청 가정복지과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구청 문화위생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5.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구청 건축허가과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